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상공무원의 원활한 직무복귀 지원을 위해 보직관리 지원 및 대체 인력 운용 근거를 마련하고, 재해보상 절차 및 기준을 명확히 정비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상공무원의 직무복귀 지원제도 도입(안 제58조)

공상공무원 보직 시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고 공무상 재해로 인한 건강 상태를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필수보직 기간 내에도 현 직위에서 근무하기 곤란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며, 결원보충이 되지 않는 공무상 질병휴직에 대해 업무대행 지정 및 업무대행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함.

나. 진단비용 지급업무 위탁 명확화(안 제32조, 제43조, 제44조, 제84조)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하는 경우의 진단 비용을 인사혁신처장이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진단비용 지급업무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함.

다. 장해등급 재판정 시 진단기한 명확화(안 제44조)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을 위한 진단 요구 시 진단기한을 재판정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명시함.

라. 재해보상부담금의 소관회계 정비(안 제60조)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재해보상부담금을 종전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관 회계로 부담하도록 명시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소방청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4. 29.~2020. 6. 12.)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5항 후단 중 “인사혁신처에서 부담한다”를 “인사혁신처장이 지급한다”로 한다.

제43조제4항 후단 중 “인사혁신처에서 부담한다”를 “인사혁신처장이 지급한다”로 한다.

제44조제3항 후단 중 “인사혁신처에서 부담한다”를 “인사혁신처장이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인사혁신처장의 요구에 따라 진단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을 “재판정 시작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제58조의 제목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사업)”을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사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재해를 입은 소속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보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무원 재해로 인한 건강상태를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특정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무상 재해로 인해 현 직위에서 근무하기 곤란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1.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

2. 공무상 요양을 마친 공무원으로서 요양을 마친 후 1년 이내인 공무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특정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른 공무상 질병휴직으로서 결원이 보충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고,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수당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0조제1항제3호 중 “지방공무원:”을 “지방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84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2조제5항 후단, 제43조제4항 후단 및 제44조제3항 후단(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진단에 드는 비용의 지급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2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① ~ ④ (생략) ⑤ 인사혁신처장은 재요양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에 드는 비용은 <u>인사혁신처에서 부담한다.</u>	제32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 <u>인사혁신처장이 지급한다.</u>
⑥ (생략) 제43조(청구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① ~ ③ (생략)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해연금 수급권자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에 드는 비용은 <u>인사혁신처에서 부담한다.</u>	⑥ (현행과 같음) 제43조(청구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u>인사혁신처장이 지급한다.</u>
⑤ (생략) 제44조(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①·② (생략)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 또는	⑤ (현행과 같음) 제44조(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하려면 해당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단에 드는 비용은 인사혁신처에서 부담한다.

④ (생략)

⑤ 제3항 전단에 따라 진단을 받은 사람은 그 진단을 한 요양기관이 발행한 공무원재해보상장해진단서를 인사혁신처장의 요구에 따라 진단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 ⑧ (생략)

제58조(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사업) <신설>

<신설>

-----.

----- 인사혁신처장이 지급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

----- 재판정 시작일로 부터 6개월 -----

-----.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58조(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사업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상 재해를 입은 소속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보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무원상 재해로 인한 건강상태를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

<신 설>

(생 략)

무원 인사 관계 법령(특정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무상 재해로 인해 현직위에서 근무하기 곤란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1.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
2. 공무상 요양을 마친 공무원으로서 요양을 마친 후 1년 이내인 공무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특정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른 공무상 질병휴직으로서 결원이 보충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고,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60조(재해보상부담금) ① 법 제 49조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부담금(이하 “재해보상부담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계에서 부담한다. 1. 2. (생략) 3. 지방자치단체 소속 <u>지방공무원</u>: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관 회계 4. (생략) ② ~ ⑤ (생략) 제84조(인사혁신처장의 업무 위탁) 법 제61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5. (생략) <u><신설></u> 6. (생략)	제60조(재해보상부담금) ① ----- ----- ----- -----. 1. 2. (현행과 같음) 3. ----- <u>지방공무원 및 소방공무원</u>: -----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4조(인사혁신처장의 업무 위탁) ----- ----- -----. 1. ~ 5. (현행과 같음) 6. 제32조제5항 후단, 제43조제4항 후단 및 제44조제3항 후단 (<u>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에 따른 <u>진단에 드는 비용의 지급</u> 7. (현행 제6호와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	
연 락 처	(044) 201 - 8134